

## 「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」 개정 신규 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안	비고
<p>제2조(정의)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2. <u>"특급탁송업체"(이하 "특송업체"라 한다)란 외국무역선·외국무역기 또는 국경출입차량을 이용하여 상업서류 또는 그 밖의 견품등을 송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로서 「관세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22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세관장에게 등록된 업체를 말한다.</u></p> <p>3. "정식통관절차"란 <u>간이통관절차</u> 적용대상 이외의 물품의 수출통관에 적용하는 절차를 말한다.</p> <p><u>&lt;신 설&gt;</u></p>	<p>제2조(정의)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2. <u>"특송업체"란 「관세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22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세관장에게 등록된 업체를 말한다.</u></p> <p>3. -----<u>목록통관절차</u>-----</p> <p>-----</p> <p>4. <u>"간이수출신고"란 정식통관절차 중 신고항목을 간소화한 수출신고를 말한다.</u></p>	<p>○ 특송물품 수입통관고시와 용어통일 - 특급탁송업체 → 특송업체</p> <p>○ 통관절차의 종류를 명확히 하기 위해 용어 변경 - 간이통관절차 → 목록통관절차</p>

현행	개정안	비고
<p>4. "<u>간이통관절차</u>"란 개인용품, 무역통계에 <u>계상되지 아니하는</u> 물품 또는 관세환급대상이 아닌 물품으로서 정식통관절차를 필요로 하지 않는 물품의 수출통관에 적용하는 <u>간이한</u> 절차를 말한다.</p> <p>5. "<u>간이통관목록</u>"이란 <u>특급탁송</u> 수출물품의 수출신고자료에 갈음하는 목록을 말한다.</p> <p>6.~12. (생략)</p> <p>13. "<u>전자상거래 업체</u>"란 <u>사이버몰(컴퓨터 등과 정보통신 설비를 이용하여 재화를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)을 이용하여 전자상거래를 업으로 하는 자</u>를 말한다.</p> <p>14. "<u>전자상거래 수출업체</u>"란 제13호에 의한 <u>전자상거래 업체 중에서 수출신고서상 거래구분 15(전자상거래에 의한 수출물품)로 신고한 자</u>를 말한다.</p>	<p>5. "<u>목록통관절차</u>"-----  <u>반영되지 않는</u> -----  -----  -----  -----<u>예외적인</u>  -----</p> <p>6. "<u>통관목록</u>"---<u>목록통관절차에 따른</u>---</p> <p>-----</p> <p><u>7.~13. (현행 제6호~제12호와 같음)</u></p> <p><u>&lt;삭 제&gt;</u></p> <p>-----</p> <p><u>&lt;삭 제&gt;</u></p>	<p>- 간이수출신고 명확하게 정의</p> <p>○ 개정조문에 따른 용어 정리</p>

현행	개정안	비고
<p><u>&lt;신 설&gt;</u></p> <p><u>&lt;신 설&gt;</u></p>	<p>14. “전자상거래 간이신고 시스템”이란 전자상거래 물품의 수출신고 시 항목을 간소화한 신고 시스템을 말한다.</p> <p>15. “수출목록 변환시스템”이란 물품의 배송 정보를 수출신고로 변환하는 시스템을 말한다.</p>	
<p>제33조의2(보세판매장 수출신고) 법 제196조에 따른 보세판매장에서 외국인에게 국내에서 생산(제조·가공·조립·수리·재생 또는 개조하는 것을 말한다. 이하 같다)된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 보세판매장 운영인은 별표 수출신고서 작성요령 <u>(1)가항에</u> 따라 수출신고서 기재 항목 중 일부 항목을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. 다만, 제7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.</p>	<p>제33조의2(보세판매장수출신고)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u>(1)가에</u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	



현행	개정안	비고
	<p><u>금액을 신고하고 수출 후 판매금액이 확정되는 때 또는 판매 후 대금입금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기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수출신고 정정신청서로 실제 공급한 금액을 신고할 수 있다.</u></p>	
<p>제35조의2(전자상거래 물품의 <u>수출신고</u>) 수출하려는 물품 가격이 200만원(FOB 기준) 이하이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<u>별표의 "수출신고서 작성요령" (1)항에 따라 수출신고서 기재항목 중 일부 항목을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.</u> 다만, 제7조 제2항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.</p> <p><u>1. 전자상거래 수출업체가 수출하는 물품</u></p>	<p>제35조의2(전자상거래 물품 <u>등의 간이수출신고</u>) ① ----- ----- -----<u>간이수출신고를 할 수 있다.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/p> <p><u>1. 수출신고서상 신고구분 E(전자상거래 간이수출신고)로 신고하거나 전자상거래 간이신고 시스템으로 신고하는 전자상거래 수출</u></p>	<p>○ 전자상거래 수출물품 등의 간이수출신고 규정</p>

현행	개정안	비고
<p>2. <u>전산연계방식(이하 "전자상거래 수출신고 플랫폼"이라 한다)으로 신고하는 전자상거래 수출 물품</u></p> <p><u>&lt;신 설&gt;</u></p> <p><u>&lt;신 설&gt;</u></p>	<p><u>물품</u></p> <p>2. <u>수출목록 변환시스템을 통해 신고하는 전자상거래 수출 물품 등</u></p> <p>② <u>제1항제1호에 따른 신고는 별표의 수출신고서 작성요령 (1)하에 따라 수출신고서 기재항목 중 일부 항목을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.</u></p> <p>③ <u>제1항제2호에 따른 신고는 별표12의 수출목록 변환시스템을 통한 수출신고서 작성요령에 따른다.</u></p>	
<p>제35조의5(전자상거래 물품의 국외반출신고에 관한 특례) 외국에서 자유무역지역으로 물품을 반입한 후 사용소비신고 등 절차를 거쳐 국내로 수입하지 아니하고 해외 개인 구매자의 주문에 따라 국외로 물품을 반출신고하</p>	<p>제35조의5(전자상거래 물품의 국외반출신고에 관한 특례) ----- ----- ----- -----</p>	

현행	개정안	비고
<p>는 경우에는 별표의 수출신고서 작성요령 (1) <u>나항</u>에 따라 수출신고서 기재 항목 중 일부 항목을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.</p>	<p><u>나에</u> -----</p>	
<p>제3장 <u>간이통관</u> 절차</p> <p>제36조(<u>간이수출신고</u>) ① <u>영 제246조제4항제3호 및 제5호</u>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송품장, 별지 제6호 서식의 (검사대상)<u>간이수출통관목록(이하 "간이통관목록등"이라 한다)</u> 또는 우편물목록을 제출하는 것으로 <u>수출신고를 대신할 수 있다</u>. 다만, 법 제226조제1항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.</p>	<p>제3장 <u>목록통관</u> 절차</p> <p>제36조(<u>목록통관</u>) ① <u>영 제246조제4항제1호, 제3호 및 제5호</u>-----  <u>통관목록(이하 "통관목록등"이라 한다)</u> ----- <u>세관장에게 제출</u>-----  <u>법 제241조제1항의 수출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</u>. -----</p>	<p>○ 정식수출신고 이외 통관절차를 명확히 하기 위해 용어 변경  - 간이통관절차 → 목록통관 절차</p>

현행	개정안	비고
<p>제37조(<u>간이통관목록자료</u> 전송) ① 특송업체는 <u>간이수출신고대상물품</u>에 대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(검사대상)<u>간이수출통관목록</u> 자료(이하 "간이통관목록자료"라 한다)를 전자문서로 통관시스템에 전송할 수 있다. 다만, 수출실적 인정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<u>간이통관목록자료</u> 기재항목 중 사업자등록번호, 세번부호(HSK 10단위)를 추가로 기재할 수 있다.</p> <p>② 제1항에 따른 <u>간이통관목록자료</u>는 운송수단의 출발시간 및 세관검사 소요시간을 고려하여 적재하기 전까지 통관시스템에 전송하여야 한다.</p>	<p>제37조(<u>통관목록자료</u> 전송) ① -----  <del>-<u>통관목록전송 대상물품</u>-</del>-----  -----<u>통관목록</u>-----  (<del>---"<u>통관목록자료</u>"---</del>)-----  -----  ----- <u>통관</u>  <u>목록자료</u> -----  -----  ----.  ② ----- <u>통관목록자료</u>-----  -----  -----  -----.</p>	
<p>제37조의2(<u>송품장 통관목록자료</u> 전송) 송품장 방식의 <u>간이수출</u> 신고인은 송품장을 별지 제17호 서식의 전자문서로 통관시스템에 제출할</p>	<p>제37조의2(<u>송품장 통관목록자료</u> 전송) -----  ----- <u>목록통관</u>-----  -----</p>	



현행	개정안	비고
수 있다.	-----.	
<p>제38조(처리담당자의 지정 및 검사대상 선별)</p> <p>① 세관장은 <u>간이수출</u> 신고물품에 대한 통관 업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특송업체별, 주기별(예, 주·월별)로 처리담당자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.</p> <p>② 세관장은 <u>간이통관목록 등</u>이 서류로 제출된 경우 신고서류를 확인하여 <u>간이수출신고</u> 요건, 반출사유 및 가격 등을 참고하여 검사대상물품을 선별할 수 있다.</p> <p>③ <u>간이통관목록자료</u>로 신고하는 물품에 대한 검사대상선별은 통합위험관리시스템에서 무작위 또는 담당자의 수작업 방식으로 선별할 수 있다.</p> <p>④ (생략)</p>	<p>제38조(처리담당자의 지정 및 검사대상 선별)</p> <p>① ----- <u>목록통관</u>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② ----- <u>통관목록등</u> ----- ----- <u>목록통관</u> ----- ----- -----.</p> <p>③ <u>통관목록자료</u>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④ (현행과 같음)</p>	

현행	개정안	비고
<p>제39조(<u>간이수출</u>신고물품의 심사) 심사자는 <u>간이수출</u> 신고물품에 대하여 <u>간이통관목록</u> 등 신고내용의 적정성을 <u>심사하여야</u> 하며, <u>간이통관목록자료</u>에 의한 신고 물품은 검사대상으로 선별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.</p>	<p>제39조(<u>목록통관</u>신고물품의 심사) -----  <u>목록통관</u> ----- <u>통관목록</u>  -----<u>심사해야</u>--, <u>통</u>  <u>관목록자료</u>-----  -----  -----.</p>	
<p>제40조(<u>간이수출</u>신고물품의 검사) 검사자는 검사대상물품으로 선별된 물품에 대하여는 <u>간이통관목록</u> 등 서류에 의하여 현품검사를 하여야 한다. 다만, <u>간이통관목록자료</u>에 의한 신고물품은 검사대상 <u>간이수출통관목록</u>(별지 제6호 서식)을 전산출력하여 현품검사를 하여야 한다.</p>	<p>제40조(<u>목록통관</u>신고물품의 검사) -----  ----- <u>통</u>  <u>관목록등</u> -----  -----, <u>통관목록자료</u>-----  -----<u>통관목록</u>-----  -----  -----.</p>	
<p>제41조(<u>간이수출</u>신고물품의 심사·검사결과 등록 등) ① 세관장은 <u>간이통관목록등</u> 또는</p>	<p>제41조(<u>목록통관</u>신고물품의 심사·검사결과 등록 등) ① ----- <u>통관목록등</u> -----</p>	

현행	개정안	비고
<p>전자문서 신고물품에 대한 심사·검사 결과 <u>간이수출신고</u> 대상물품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이상이 있는 경우 <u>간이통관목록등</u> 서류에 신고취하표시를 하거나 전산등록하여 직권 신고취소 등 조치를 하여야 한다.</p> <p>② (생략)</p> <p>③ 세관장은 <u>간이통관목록</u> 등 또는 전자문서 신고물품을 심사·검사한 결과 이상이 없는 물품에 대하여는 <u>간이통관목록 등</u>에 고무인(별표2, 별표5)을 날인하거나 전산등록하여 신고수리할 수 있다.</p>	<p>----- <u>목</u></p> <p><u>록통관</u> -----</p> <p>----- <u>통관목록등</u>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----- <u>통관목록</u>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 <u>통관목록등</u>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	
<p>제42조(우편물목록의 특례) ① 세관장은 <u>간이수출신고대상</u> 우편물에 대하여 우편물목록의 제출, 심사 및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. 다만,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우편물목록을 제출받아 검사를 할 수 있다.</p>	<p>제42조(우편물목록의 특례) ① ----- <u>목록</u></p> <p><u>통관신고대상</u>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	

현행	개정안	비고
② (생략)	② (현행과 같음)	
<p>제44조(적하목록에의 같음 등) ① 특송업체 등은 <u>간이통관목록자료</u>를 전송하여 신고수리된 물품에 대하여 출항 적하목록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. 다만, <u>간이통관목록</u> 등 서류제출신고물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p> <p>② 제1항에 따른 <u>간이수출신고수리물품</u>에 대하여는 제2장 및 제4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</p>	<p>제44조(적하목록에의 같음 등) ① -----  <u>통관목록자료</u>-----  -----  -----, <u>통관목록</u> -----  -----  ② -----<u>신고수리물품</u>-----  -----  -----.</p>	
<p>제48조(적하목록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수출 물품의 적재 등) ① (생략)</p> <p>② (생략)</p> <p><u>&lt;신설&gt;</u></p>	<p>제48조(적하목록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수출 물품의 적재 등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<u>제35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수출신고를 하는 경우 수출목록 변환시스템을 통한 적재이행신고로 출항적하목록 제출을 갈음한</u></p>	<p>○ 수출목록 변환 시스템을 통한 적재이행절차 신설</p>

현행	개정안	비고
	다.	
[별지 제6호서식] <u>[검사대상]간이수출통관목록</u>	[별지 제6호서식] <u>[검사대상]통관목록</u>	○ 용어변경에 따라 서식명 수정
<p>[별지 제17호서식] <u>송품장 간이수출 신고[수리서</u> (생략) 위와 같이 「관세법」 제241조와 「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」제37조의2에 따라 송품장에 의한 <u>간이</u>수출을 신고합니다.</p>	<p>[별지 제17호서식] <u>송품장 통관목록수출 신고</u> <u>[수리서</u> (현행과 같음) ----- ----- -- <u>통관목록수출</u>-----.</p>	○ 용어변경에 따라 서식명 수정

현행	개정안	비고
<p><u>&lt;신 설&gt;</u></p>	<p>[별표 12] <u>수출목록 변환시스템을 통한 수출신고서 작성요령</u></p>	<p>○ 신규 시스템 이용한 신고서 신고서 작성요령 추가</p>